의안번호	5114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의 원	안신일 의원 외 13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신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14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안신일,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 등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분야의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수한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지원해 지역연고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역연고인재 및 참여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연고인재의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연고인재”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참여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연고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고인재와 참여기업 간 채용 연계

2. 채용정보 제공 및 홍보

3.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연고인재 및 참여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와 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